

## 서울특별시와 미국 신재생에너지환경재단 간 양해각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신재생에너지환경재단(이하 “FREE”라 한다)은 서울시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및 파이낸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서울시와 FREE(이하 “양측”이라 한다)는 기후변화 리스크 완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파이낸싱 전략 개발 및 이행을 위한 상호 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본 양해각서는 양측 간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및 파이낸싱 정보 교류와 제도적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협력 분야)

양측은 다음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 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및 파이낸싱 전략 개발을 위한 협력
- ② 양측 간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의 모범정책 및 파이낸싱 전략에 관한 최신 정보 교환
- ③ 양측이 서면 합의한 기타 사항에 대한 협력

### 제3조 (일반 조항)

- ① 본 양해각서는 양측간 협력과 상호교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추후 양측이 법적 효력을 지닌 특정한 사업 수행에 합의할 경우, 양측의 역할, 책임, 결과물, 예산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한다.

②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을 통해 생겨나는 지적재산권의 귀속, 사용 등 처리 방식은 개별 사안별로 상호 협의와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양측이 결정한다.

#### 제4조 (기밀 유지)

한 당사자에게 기밀 혹은 독점적 정보라 여겨지는 정보의 공유를 희망할 경우, 양측은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 제5조 (효력과 종료)

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대표자가 모두 서명을 마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갱신일 최소 3개월 전까지 양측이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본 양해각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상기의 내용을 확증하기 위하여 양측은 정당하게 수권된 대표자를 통해 서명하며, 양해각서는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하며, 2부 모두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협의한다.

2015년 6월 16일

신재생에너지환경재단  
이사장/CEO



---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김호성

---